

# - 공공지원 추진위원회/조합 구성지원 - 시 보조금 지원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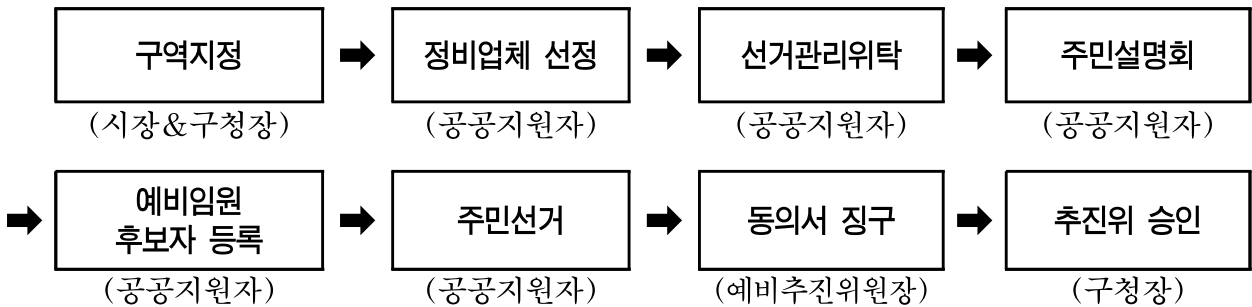
〈19.01.29. 작성〉

## 1. 공공지원 추진내용

### □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

#### ○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
- 지원대상 :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 완료구역
- 지원기간 : 용역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(정비업체 선정~추진위 승인)
-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절차(공공지원자 시행)



#### ○ 공공지원자 지원사항

- 공공지원 용역 발주 및 계약
  - ▶ 대상업체 :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
  - ▶ 주요업무 : 토지등소유자 선거인명부 작성, 주민설명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 지원, 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우편발송 등
- 선거관리 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등
  - ▶ 대 상 : 예비추진위원장·감사 주민선거
  - ▶ 선거관리 위탁시기 : 구역지정후 최초 추진위 구성 지원시
  - ▶ 수탁기관 : 구 선거관리위원회
  - ▶ 선거관리 주체별 업무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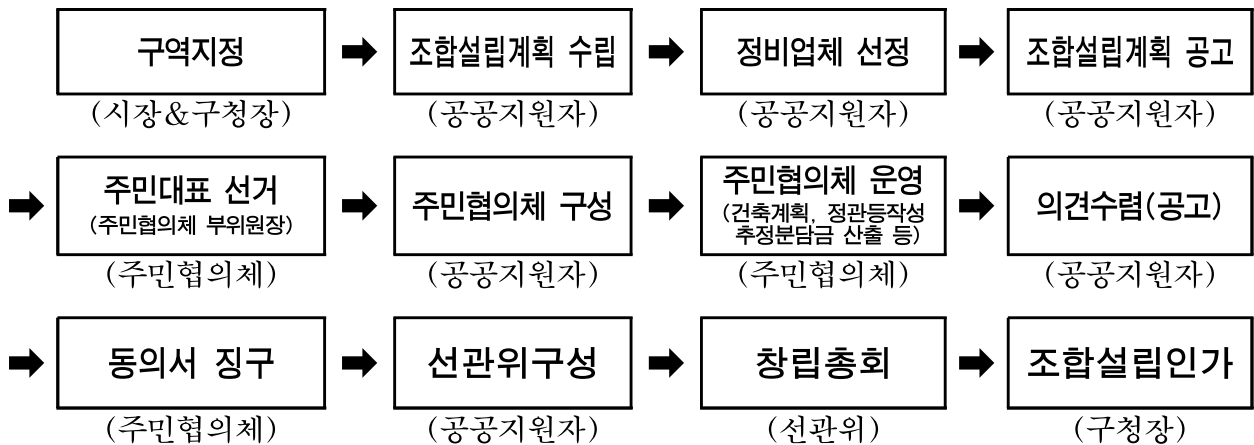
| 공공지원자  | 선거관리위원회   | 비 고             |
|--|---|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</li> <li>▷ 선거인명부 확정</li> <li>▷ 주민설명회, 합동연설회 개최</li> <li>▷ 선거홍보, 부정선거 단속 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투표개표 관리</li> </ul> | 협약으로 위탁범위<br>확정 |

- ▶ 소요비용 : 구역별 10백만원(선거위탁비 5 + 부정선거 단속비 5)  
※ 실 소요비용에 따라 사후정산

## □ 조합설립 지원(추진위 생략)

### ○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공공지원 조합설립 지원(추진위 생략)
- 지원대상 : 정비계획수립 기초조사 추진위생략 의견 과반수 구역  
※ 서울시 보조금 교부 대상은 하단 별도 명시
- 지원기간 : 용역 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(정비업체 선정~조합설립)
- 조합설립 업무 지원 절차(공공지원자 시행)



### ○ 조합설립 주요내용

- 공공지원자(구청장)
  - 조합설립계획 수립, 정비업체 선정, 주민협의체 구성 등
  - 주민협의체 위원 등 선임
    - 위원장 : 변호사 등 전문가로 공공지원자가 위촉
    - 부위원장 :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주민대표자로 선임
    - 위 원 : 토지등소유자 1/20이상(최소 10명이상)
- 주민협의체 구성
  -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(1/20 이상, 최소 10명)
  -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
  - 조합정관안 작성,
  - 조합의 업무, 예산·회계, 선거관리 등 규정 작성,
  -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
  -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
- 창립총회(주민대표인 부위원장(창립총회 의장)이 소집)
  - 조합임원(조합장, 이사 등), 대의원 선임
  - 조합정관 확정, 예산회계규정, 선거관리규정, 행정업무규정 등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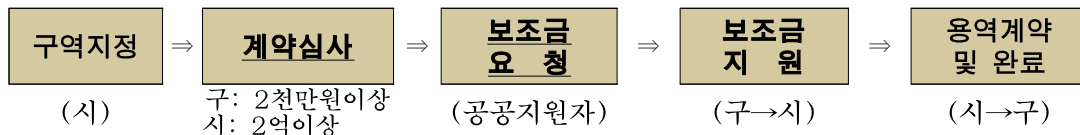
## 2. 시 보조금 교부기준

- 교부대상 :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 완료구역
- 지원요건

| 구 분  |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 |      | 조합 직접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민의견 | 추진찬성 50% 이상      | 교부   | 토지등소유자 3/4이상<br>추진위 생략 의견 : 교부 |
|      | 추진반대 25% 미만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한도 | 토지등소유자 1,000명 미만 | 1.0억 | 3.0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토지등소유자 1,000명 이상 | 2.5억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【공 통】

- 용역비지원 :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급(30~70%)
- 계약심사후 보조금 지원 : 전체 사업비 2억이상(시)/ 2억미만~2천만원(구)



### ○ 교부조건

-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
-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집행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
- 시 보조금 집행잔액(미집행, 정산 등) 발생시 즉시 반납
- 교부조건 미이행시,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, 반환, 추가 교부중지 등 불이익 처분
- 집행잔액 미반납시 시보조금 지원 금지('18.1.1부터 시행)
  -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영
- 업무별 인력 및 비용 등 변경시 자치구와 서울시 상호 협의 조정 가능
  - 다만, “직접경비” 항목별 안전요원, 안내요원 인원수는 필요시 상호 전용가능

붙임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비보조율 기준(2019년) 1부.

<붙임>

##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비 보조율 기준

< 2019년 >

자치구별 시비 보조율 (자치구별 재정력 기준)

| 기준재정<br>수요충족도<br>(재정력) | 1군           | 2군  | 3군   | 4군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40~50%       | 50~70%  | 70~100%  | 100%이상       |    |
| 해 당<br>자치구             | 노원구<br>(1개구) | 성동구, 광진구,<br>동대문, 중랑구,<br>성북구, 강북구,<br>도봉구, 은평구,<br>서대문, 양천구,<br>강서구, 구로구,<br>금천구, 동작구,<br>관악구, 강동구<br>(16개구) | 종로구, 중 구<br>용산구, 마포구<br>영등포, 서초구<br>송파구<br>(7개구) | 강남구<br>(1개구) |    |
| 시비보조율                  | 70%이내        | 60%이내   | 50%이내  | 30%이내        |    |

「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」 별표2

| 자치구 재정력 | 40~50% | 50~70% | 70~100% | 100%이상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지원비율    | 70%이내  | 60%이내  | 50%이내   | 필요시<br>30%이내 |